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2022. 12.

I. 운영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 ◆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II.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특징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를 원칙, 비공개는 예외로 운영
 -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한적으로 해석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공개대상정보로 열거된 정보는 비밀정보는 아니며 공공기관이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함
 - 공공기관은 공익의 필요 및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법령이 금지하지 않는 한 공개할 수 있음
-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때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비공개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
- 비공개대상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은 공공기관이 하며, 그러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에 제9조 제1항 각호까지 명시하고 비공개사유를 기재

III. 비공개 기준

- 법 제9조 제1항에서 비밀·보안사항, 개인정보, 재판 진행 중인 사항 및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사항 등 공개가 곤란하거나 제한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음. 다만,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법 제9조 제2항)

IV.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공개 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대법원 2006. 1. 13. 2004두 12629 판결)

□ 비공개 유형

1. 비밀 또는 타 법률상 비공개 관련 정보
2.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3.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10조)
4.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정보(공무원징계령 제20조)
5.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로서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6.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자료(통계법 제33조)
7.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6조, 변호사법 제2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6,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8.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발명진흥법 제19조)

9.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내용(통신비밀 보호법 제3조)
10.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 관련 사례(행정심판, 판결례, 외국 사례 등)

1.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청구권에 대하여 비공개를 정당화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 (1998. 9. 25)
2. 민원문서 및 처리회신문서 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정당화한 국무총리행정심판 위원회의 재결례 (1998. 12. 28)
3. 국가정보원의 조직·소재지·정원 및 예산내역은 정보공개제도에 의하여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안됨 ⇒ 비공개
 - 위 해당사항은 국가정보원법 제6조(조직·소재지·정원)와 제12조(예산)에 의하여“법률”로 명백하게 비공개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
4. 공무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정보공개제도에 의해서도 누설되어서는 안됨 ⇒ 비공개
 -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를 명문으로 요구받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정보공개제도에 의해서도 비공개되어야 함
5. 국회법 제118조 제4항 본문에서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함(서울행법 2005구합28133)

□ 소관부서별 주요 비공개 대상 정보

소관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관련법령	근거
기획조정실	국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에서의 비공개 회의 관련 정보 - 국회 관련 정보 중 공개하기로 결정되지 아니한 정보 - 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정보 - 내부 검토과정으로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당정회의 관련 정보 등 - 공개시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보 등 	국회법 제118조	제1호
경영혁신실	국민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제안자의 신상정보 및 제안내용 - 공개시 특정대상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등 	국민제안규정 제7조	제1호
안전혁신실	시설물 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댐, 수도 등 K-water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유지관리 및 성능평가 관련 업무상 알게된 비밀에 관련된 정보 - 공개시 보안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1조	제1호
인재경영처	건강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의 건강진단과 관련된 정보 	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	제1호
정보관리처	통신 비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받지 아니한 통화상의 대화 내용 -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 - 공개시 특정대상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등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호
물산업혁신처	직무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사항 - K-water 내 지식재산권 관리(출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 지식재산권 출원심의위원회 관련 사항 - 공개시 특정대상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침해하거나 창의적 사고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발명진흥법 제19조	제1호
해당 부서	민간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투자관련 제안서의 세부사항 (제안내용 공고 및 입찰완료 전까지) - 제안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공개시 특정대상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1조의3	제1호
해당 부서	디자인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원 공개되지 않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되지 않은 등록출원 및 심사 중인 서류 -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로 비밀로 설정한 디자인 서류 등 - 공개시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보 등 	디자인보호법 제43조	제1호
전 부서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소관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관련법령	근거
전 부서	통계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작성 중 수집된 비밀에 관한 사항(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사항) - 공개시 특정대상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등 	통계법 제33조	제1호
전 부서	업체의 업무 및 재산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수행 상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중 공사업자에 피해가 되는 정보 - 특정 대상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전기공사업법 제37조	제1호
전 부서	세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수행 상 알게된 과세 정보 - 공개시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호
전 부서	설계, 감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상 알게된 건설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 설계 또는 감리 수행과정에서 알게된 정보 등 - 공개시 특정 대상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8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24조	제1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6. 1. 13. 2004두 12629 판결)

* 이러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정보가 제2호에 의해 비공개되려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함. 이는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의 투명성, 국가적 의혹해소, 그리고 개별국민의 권익보장과 같은 공개로 인한 이익과 공개되었을 때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미칠 영향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어느 이익이 더 우선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비공개 유형

1. 대북한 관련 정보수집 · 분석자료 및 회의록 등
2.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3. 을지훈련 관련 기본계획, 자체 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 관련 각종문서,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결과 보고서와 같은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예비군 관련 각종 문건
4.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전체 IP세부할당 현황, 취약점 등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및 공사경영정보 및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5.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6. 전시 자동차 동원관련 정보
- 7. 전시 건설기계 동원관련 정보
- 8. 임진강 남북 공동 수해방지 협력, 남북 접경지역 공유하천(임진강·북한강) 개발 등 북한사업 추진관련 정보
- 9. 공개될 경우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국외개발사업 추진 관련 정보
- 10. 군시설 건설공사(건축설계, 구조설계 및 구조계산서 등) 및 보상관련 정보
- 11. 안보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태세 등
- 12.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의 도면 및 구조도
- 13. 취수장, 정수장 및 기타 상·하수처리시설의 도면 및 구조도
- 14. 그 밖에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 사례(행정심판, 판결례, 외국 사례 등)

- 1. 누설한 사항 중 일부 내용이 실제 군사기밀 내용과 다른 경우에도 나머지 부분이 군사 기밀인 내용을 제대로 담고 있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군사기밀에 해당함 (대법원 2001. 1. 28 선고 99도 4022 판결)

소관부서별 주요 비공개 대상 정보

소관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비상계획처 정보관리처	비밀 및 대외비	- 비밀, 대외비 등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침해되는 정보 -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비밀수발대상, EAP(비상대책계획) 등 - 공개시 K-water의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등	제2호
비상계획처	을지훈련	- 을지훈련 관련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 평회 보고서 등 - 공개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2호

소관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비상계획처	총무계획 민방위	- 총무계획 관련 각종문서 -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결과 보고서,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직장 예비군 편성표, 예비군 관련 각종 문건 등 - 공개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2호
비상계획처	비상계획	- 대테러대비 전략, 전시 인력동원, 전시 예산자료, 국가기반 체계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등 비상계획 관련 정보 - 공개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2호
비상계획처	관계기관 비공개 정보	-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대한 사항으로서 국가 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공개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2호
비상계획처	국가보안시설	-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기반시설(댐, 정수장 등) 도면 및 설계 정보 - 공개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K-water의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등	제2호
비상계획처	무기고 및 탄약관리	- 무기고 및 탄약고 위치 및 관리정보 - 공개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K-water의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등	제2호
비상계획처	국방상 필요정보	- 국방상 필요한 특허, 실용실안, 디자인과 관련된 정보 등 - 공개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2호
정보관리처	정보보호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 내부대책 및 전략 등에 관련된 정보	제2호
정보관리처	정보통신보안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보안 USB 관련 자료 등 - 공개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K-water의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등	제2호
정보관리처	전산보안	- 서버 및 단말기 현황, 정보보안 업무계획, 암호장비 등 공개시 K-water의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등	제2호
정보관리처	무선통신망	- 통신보안시설장비, 무선통신망 연결현황 등 공개시 K-water의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등	제2호
정보보안처	보안USB	- 보안USB 관리정보 및 보안USB 내 정보 등 공개시 K-water의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등	제2호
정보보안처	보안점검	- 보안점검 결과 등 공개시 K-water의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등	제2호
정보보안처	사이버 보안점검	- 사이버 보안점검 자료, 해킹사고 내역, 사이버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방안, 모의훈련 자료 등 공개시 K-water의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등	제2호
정보보안처	기타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등에 관한사항으로 공개시 K-water 및 국가의 보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정보	제2호
물관리기획처 한강유역본부	북한사업	- K-water가 수행하는 북한사업(남북경제협력사업 등) 관련 정보 - 공개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K-water의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등	제2호
물환경안전처	위험물	- 정수장, 실험실 등 화학물질 위치 현황 - 수질검사소 내 화학물질 위치 현황 - 공개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K-water의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등	제2호

소관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물산업혁신처	지식(산업) 재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통상협정,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외교관련 문서 등 - 공개시 K-water의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등 	제2호
전 부서	주요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여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대한 사항 - 공개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 등 	제2호
전 부서	시설 설계도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상수도 GIS 도면, 관로 매설 관련 정보 - 댐, 취수장, 관로, 정수장 등 K-water 관리 중인 시설물 설계도면 등 - 공개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K-water의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등 	제2호
전 부서	도로명 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중요시설물 및 공개제한 시설물에 대한 도로명 주소 정보 등 - 공개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K-water의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등 	제2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 비공개 이유 제4호, 제5호나 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각호가 보호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임

□ 비공개 유형

1. 댐, 수도 등 국가주요시설물에 대한 세부도면이나 구조도
2. 범죄목표가 될 수 있는 시설 등의 설계도, 구조, 경비에 관한 사항
3. 공사 인감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위·변조 등)의 사용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신고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등 명단
5. 그 밖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관련 사례(행정심판, 판결례, 외국 사례 등)

1. 법집행 문제와 관련한 담당 공무원의 성명과 신원확인 가능한 정보 등
⇒ 비공개
(Luther v. LRS, No. 5-86-130, Slip op. at 6 (D. Minn. Aug. 13, 1987))
2. 형사사건 수사에 참여한 정보원 및 비밀수사원의 신원 ⇒ 비공개
(McQueem v. U.S., 264 F.Supp. 2d 502, 521 (S.D. Tex. 2003))
3. 침수예상 지도(inundation maps)의 공개로 인하여 테러리스트들의 댐에 대한 공격 위함을 증가시켜 하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린다고 예상되는 경우 ⇒ 비공개

(Living Rivers, Inc. v. U.S. Bureau of Reclamation, 245F. Supp. 2d 1313, 1321-1322(D, Utah 2003))

4. 국가보안유공자 관련 정보 ⇒ 비공개

국가보안유공자 관련 청구서와 접수대장,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심사자료, 소집공문, 결정문, 회의록, 결과보고서, 결과통지서, 통보서 등은 공개될 경우 국가 보안유공자들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비공개되어야 함

□ 소관부서별 주요 비공개 대상 정보

소관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경영혁신실 비상계획처	경비	- 댐, 정수장, 사옥 등 시설 경비에 관한 정보 - 청원경찰 업무수행 내용에 관한 정보 - 자회사 경비직 과업지시서 등 - 공개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3호
안전혁신실 비상계획처	비상상황실 운영	- 전시, 위기대응시 비상상황실 운영 및 조직구성 정보 - 공개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3호
안전혁신실	방재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와 연관있는 방재행정정보 (방재근무일지 등) 등 - 공개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3호
안전혁신실	재난관리 및 위기대응	- 전사적 재난관리 및 위기대응 매뉴얼 등 위기대응 관련 정보 - 공개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3호
안전혁신실	시설물 안전관리	- 댐, 수도 등 K-water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안전계획,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유지관리 및 성능평가 관련 업무상 알게된 비밀에 관련된 정보 - 공개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3호
안전혁신실	위기관리 매뉴얼	- 사업소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대응하는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이와 관련된 정보 등	제3호
안전혁신실	안전한국훈련	- 안전한국훈련 계획 등 공개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3호
비상계획처	무기고 및 탄약관리	- 무기고 및 탄약고 위치 및 관리정보 - 공개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3호

소관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비상계획처	비상계획	- 대테러대비 전략, 전시 인력동원, 전시 예산자료, 국가기반 체계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등 비상계획 관련 정보 - 공개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3호
글로벌기획설계처 공간경관처	시설물 관리	- 댐, 정수장, 관로 등 시설물 관련 자료(도면 및 설계자료 등) - 다중이용시설(물문화관, K-water 관리 공원, 체육시설 등)에 대한 도면 및 설계자료 - 공개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3호
K-water연구원	연구성과	- 공개되기 전 중간 연구 성과에 관한 정보 - 공개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3호
인재경영처	범죄, 위법, 부정행위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 피의자 명단 - 공개로 인해 고발자 및 가족 등이 생명, 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 - 공개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3호
인재경영처	인감업무	- K-water 인감 및 직인 등 인장에 관한 정보 - 도용할 경우 위·변조, 범죄악용될 위험이 있는 정보 - 공개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3호
재무관리처	건축허가자료	- 개인의 건축물 인허가 관련 평면도, 단면도, 상세도 등 - 국유재산(수도용지 등) 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개인의 건축허가 자료 등 - 공개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3호
수자원운영처 기후탄소사업처	전력거래	- 전력거래 업무계획, 전력거래 발전실적 및 수익분석 자료 등 관련 정보 등 - 공개시 K-water의 업무수행 및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3호
물환경안전처	위험물	- 정수장, 실험실, 수질검사소 등 화학물질 위치 현황 - 위험물질 저장시설 및 관리시설 정보 및 설계도 등 - 공개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3호
수도개발처	환경영향평가	- 댐, 수도 등 시설물 환경영향평가, 사업계획, 사전협의자료 등 공개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3호
수도관리처	유해화학물질 관리	-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저장 및 사용내역, 취급설비관리 및 지도점검내역 등 - 공개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3호
기술기획처	기술자료	- 댐, 수도 등 K-water 기술자료 중 공개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3호
기술기획처	도면	- 발전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한 도면 및 이와 관련된 자료	제3호

소관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해당 부서	시설물 돌발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댐 방류설비, 댐 발전설비 등 시설물 정지 및 돌발복구 관련 정보 - 공개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3호
해당 부서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안전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3호

-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 12629 판결)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

- 당사자의 인격적 재산적인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며
- 재판을 위한 증거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아니하는 일이 없어야 함
- 판결 전에 재판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에 문제가 발생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라고 하는 형사사건정보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인 형사사후정보가 그 대상이 됨

□ 비공개 유형

1. 판결 전 재판 기록에 관한 정보
2.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3.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정보
4.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부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정보

5. 그 밖의 공개될 경우 재판 관련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관련 사례(행정심판, 판결례, 외국 사례 등)

1. 정보원이나 정보수집기법과 관련된 정보가 향후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방해를 줄 위험성이 있어 비공개 (전주지법 2000. 2. 15. 선고 99 구 147 판결)

□ 소관부서별 주요 비공개 대상 정보

소관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감사실 법무실 인재경영처	범죄사건, 감사고발 등	- 범죄사건 관련 진정 및 내사정보 - 감사결과 고발 관련 정보 - 공개될 경우 재판 관련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4호
감사실 법무실 인재경영처	수사정보	- 수사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 공개될 경우 재판 관련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4호
법무실	소송, 심판	- 재판 관련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보고서, 소송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결과, 사실조회결과, 조서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등 공개될 경우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	제4호
인재경영처	보안처분	-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 등 처리현황 - 공개될 경우 재판 관련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4호
비상계획처	순찰 및 경비 등	- 자사 및 사무실 경비 초소 위치, 순찰 시간표 및 경로, 일지, 경비시스템, CCTV 등 순찰 및 경비에 관련된 정보	제4호
해당 부서	기타	- 공개될 경우 재판 관련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4호
전 부서	범죄 예방	- 공개할 경우 경비 활동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본연의 목적 달성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경비초소 위치, 경비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무기화약·마약·독극물·방사성물질·정수약품 등의 제조·운반·보관 관리체계 및 각종 기반 시설물(댐, 정수장 등) 등의 설계도·구조·경비 등	제4호

-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다만,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그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유형

1. 감사·감독·검사 관련 정보

- 증거인멸 등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있는 정보
- 감사 등의 결과(조치 요구사항 포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2. 시험관련 정보

-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해당 시험 및 그에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

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 공개할 경우 향후 동일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3. 인·허가 등의 규제 관련 정보

- 인허가 대상자 선정 절차 등 공개할 경우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다만, 인허가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 및 심사 기준은 공개)
- 개별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

4. 입찰관련 정보

-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 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교섭 완료 이전에 공개할 경우 교섭의 난항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5. 기술개발 관련 정보

- 완료 전에 공개할 경우,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6. 인사관리 관련 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공정한 판정·평가 업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7.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에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단, 사업 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의 심의·협약·조사 등의 자료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 개별 위원이 부여한 점수 및 평가내용
-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 공개로 인해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심사 중에 있는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법률 등 개정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무원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는 협상 당사자로서 공무원단체 등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비공개 가능

8.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관련 사례(행정심판, 판결례, 외국 사례 등)

1. 의사결정과정 내지 심의과정에서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때, 또는 대외적 공표가 있기 전”까지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됨(대법원 2000. 5. 30 선고)
2.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부분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함(대법원 2002 두 12946)

3.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평가항목별 채점결과는 평가항목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결과를 공개하면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시시비비에 휘말릴 수 있고 업무 수행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평가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여 비공개(대구지법 2006구합820)
4. 고충민원위원회 회의록, 고충민원 소위원회 회의록, 고충민원 조사 결과 보고서, 재심민원 검토결과 보고서 부분에 대하여 위원회·심의의결을 위한 내부의견 표명자료는 공개시 위원회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쳐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비공개(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3-01657)

□ 소관부서별 주요 비공개 대상 정보

소관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감사실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 - 현지조치사항과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자율처리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감사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및 처분요구서,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사항 및 처리서류 등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감사실 비서실	비위행위, 감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위행위 조사 관련 정보 - 감찰조사 계획, 감찰 수행자 명단, 감찰방법 등 관련 정보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감사실 인재경영처	복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무점검, 불시점검 계획 및 점검결과 관련 정보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감사실 글로벌기획설계처	공사 관련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총공사비 심의 및 설계서 등 검토 중에 있는 정보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미래전략실 재무관리처	신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사업 기획 및 사업분석 관련 정보 - 신규 투자사업 선정 및 평가과정 중에 있는 정보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소관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홍보실	홍보	- K-water 홍보계획 등 관련 계획 수립과정 중에 있는 정보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기획조정실	조직, 직제 정원관리	- 조직 및 직제변경, 정원의 신청 및 배부 등 사전공개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주는 정보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기획조정실	예산	- 예산 편성 전 검토 중에 있는 정보, 예산안심사에 관한 정보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경영혁신실	국민소통	- 국민 제안 심사에 관한 정보 - 국민협업(디자인단) 구성 및 심사에 관한 정보 등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경영혁신실	창의혁신	- 창의혁신(CoP) 심사에 관한 정보 - 창의혁신 추진계획 등 관련 계획 수립과정 중에 있는 정보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경영혁신실	지식경영	- 지식경영 추진계획 등 관련 계획 수립과정 중에 있는 정보 - 지식 마일리지 심사 등 심사에 관련된 정보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경영혁신실	경영평가	- 정부경영평가 과정 중인 정보, 평가결과 후속조치 관련 자료, 경영평가 수검 자료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경영혁신실	내부평가	- 내부평가 과정 중인 정보 등 공개시 K-water의 보안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경영혁신실	ISO 인증, 심사	- ISO 인증, 갱신, 사후관리 등 관련 정보, 심사 과정 중의 검토자료 등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법무실	법령 및 고시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 결정에 관련된 정보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법무실	위원회	- 위원회 회의록 등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회의내용 공개로 외부 부당압력 등 업무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소관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법무실	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상수도 위수탁 협약, 현대화사업 협약 등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과 맺은 협약서 내용 등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안전혁신실	재난·안전·리스크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water 전사 재난, 안전, 리스크관리 계획 수립 등 관련 검토 중에 있는 정보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글로벌사업본부	해외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사업 추진전략 등 관련 계획 수립과정 중에 있는 정보 - 해외 수자원, 수도, 에너지 사업 설계 및 검토 관련 정보 - ODA 사업 수행 검토 자료 등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글로벌기획설계처	기술기준 검토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water 기술기준 확정 전 검토 중에 있는 정보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K-water연구원 기술기획처 물산업혁신처	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완료 전 공개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K-water연구원 물산업혁신처	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개발중인 용역, 과제, 신제품, 신기술, 사내벤처 시제품 관련 정보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인재경영처	징계위원회 회의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 회의에 관한 정보 	제5호
인재경영처	인사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임용, 승진, 인사교류 사항 등 공개될 경우 인사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직원 근무성적 평가, 승진심사, 다면평가자료, 승진심사위원회 심사자료,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자료, 면접위원 관련 자료 등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인재경영처	채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공고 전 직원 결원, 총원 관련 정보 및 채용계획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인재경영처 인재개발원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 필기시험 문제 및 답안지 관련 정보 - 채용 면접전형 점수에 관한 정보 - 교육과정에서의 시험문제에 관한 정보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소관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인재경영처	징계	- 징계 수준 결정 등 징계의결 과정 정보,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인재경영처	노사관리	-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노동쟁의 협의 관련 자료 - 노사간 협상 결과 및 요구서 등 - 기타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자료 등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재무관리처	회계, 결산, 자금 등	- 회계 및 자산 결산 검토 과정 중에 있는 정보 - 자금의 조달 및 운영 계획 수립 중에 있는 정보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재무관리처 공간경관처	건축물	- 사옥, 시설물 내 건축물(정수장 등) 신축, 증축에 대한 감사, 감독, 계약 등 검토과정 중에 있는 정보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재무관리처 기술기획처	심사 및 평가	- 심사 및 평가 수행자, 심사방법 등 미리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공정한 판단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심사 및 평가 진행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심사 및 평가 위원 명단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재무관리처	계약특수조건 검토정보	- 계약특수조건 및 계약업무규정 개정 전 검토중에 있는 정보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재무관리처	계약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 첨부서류, 입찰종료 전 예정가격 조서 등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자간 공정한 경쟁이 침해될 정보 - 입찰참가 업체의 설계시공 정보 등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낙찰 전 적격심사 및 입찰평가 과정 중의 검토서류 등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디지털플랫폼처	ERP운영관리	- K-water 업무프로세스 혁신 추진, ERP 시스템 구축 관련 검토 중에 있는 정보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정보관리처	정보관리	- 국가 정보화 정책 추진 및 IT 신기술 도입 등 검토 과정 중에 있는 자료 - 정보화 사업, 정보화 제도, 표준체계, 정보화 인프라 구축, 정보보안실태평가 등 관련 검토 중에 있는 정보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소관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인재개발원	인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인력개발계획, 연간 교육계획 등 관련 계획 수립과정 중에 있는 정보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물관리기획처	통합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물관리 기반 신규사업 검토 관련 정보 - 국가·유역물관리 계획, 하천유역수자원 관리계획, 댐관리 기본계획, 전국수도종합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검토 과정 중에 있는 정보 - 신규 댐 및 수도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관련 정보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물환경처	물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환경(수질·수생태) 개선 종합 대책 수립 등 관련 검토 중에 있는 정보 - 친환경 수처리 등 물순환 체계 신기술 사업화 관련 검토 중에 있는 정보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수도기획처	수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공급 관련 제도(요금, 용수) 등 기획 및 개선 검토 중에 있는 정보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수도관리처	점검정비용역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정비용역 선정 전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등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물종합진단처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관망, 정수장, 댐·보) 등 진단에 관한 정보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진단정보(제어설비, 수차성능 등) - 성능시험센터 및 국제공인교정기관에서의 진단결과 정보 등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수변기획처	수변(단지)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변사업(단지사업) 경영계획 수립, 사업성 분석 등 검토 중에 있는 정보 - 단지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중 검토중에 있는 자료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기술기획처	기술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자문, 기술심의, 설계VE 등 검토 중에 있는 정보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물산업혁신처	중소기업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내외 벤처 창업 및 육성 계획, 선발 검토 관련 정보 - 스타트업 매칭 관련 검토 정보 - 중소·벤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및 물산업 클러스터 지원 관련 검토 정보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소관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기후탄소사업처	물에너지	- 물에너지사업 계획, 수상태양광, 수열에너지 사업 계획 등 검토 중에 있는 정보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기후탄소사업처	물에너지사업	- 물에너지사업 계획, 개발 검토 중에 있는 정보 - RPS 이행 관련 검토 중에 있는 정보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해당 부서	사업제안서	- 사업제안서 작성 및 세부업무계획, 사업개발 착수단계 정보자료 등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해당 부서	건설관련 인허가	- 신규사업 건설 관련 주요 인허가 관련 정보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해당 부서	폐기물 관련 인허가	- 건설폐기물, 슬러지 등 폐기물 관련 인허가 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해당 부서	기타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전 부서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 정책수립, 사업추진 관련 내부검토 및 의견수렴, 조정 중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전 부서	단속 및 지도점검	- 각종 단속, 지도점검 업무 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정보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전 부서	인허가 및 규제	- 개인, 법인 등 사업계획, 생산기술, 신기술 등 공개시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전 부서	신규건설사업	- 신규 건설사업 총공사비, 주요공정 주요설비 설치계획, 사업부지 발굴, 건설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 공개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전 부서	메뉴얼	- K-water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제작된 매뉴얼 또는 가이드북 중 제정 및 개정 검토 중에 있는 정보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사항은 공개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비공개 이유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판결)

□ 비공개 유형

1.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사상 및 양심, 종교 및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등
2. 개인생활에 대한 각종 명부, 개인의 주거에 관한 정보, 개인의 자산에 관한 정보, 학교교육에 관한 정보 등
3.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등의 위원 이름, 거래상대방, 간담회의 참석자 등이 포함된 정보(다만 공익을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 서울고등법원 2016누65987)

4.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에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직원에 관한 정보
 - 특정 직원의 개인정보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출장명령서, 출근부의 직원성명 등)
 - 특정 직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한다.
6.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 통지, 결격사유조치,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7.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관련 정보
8. 각종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된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9. 기관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10.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 개인이 권리구제·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있음
11. 기타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신체장애자 상담원 명부)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 개인정보가 기록된 정보의 일부공개 처리

- 특정개인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통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하기 때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함으로써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기타 정보에 대한 공개를 할 수 있음

* 「사자(死者)」에 관한 개인정보는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그 자체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자(死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의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함

□ 관련 사례(행정심판, 판결례, 외국 사례 등)

1.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인적사항은 물론 재산 등에 관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가 됨 (대법원 2003. 12.11)
2.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판결) ⇒ 비공개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3.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등에 나타난 주민번호나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서울고법 2002. 8. 27. 선고 2001누17274 판결) ⇒ 비공개
- 주민등록번호나 은행 등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는 개인의 이름과 결합되어 전자거래 등에 있어 동일인 판단 등에 관한 기본 자료로 사용되어 아무런 제한 없이 공개될 경우, 이를 부정사용하면 당해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재산·신용에 대한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인 정보 중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동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 소관부서별 주요 비공개 대상 정보

소관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감사실 인재경영처	감사, 징계	- 감사결과 또는 징계처분 결과 중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제6호
경영혁신실 정보관리처	시스템 내 개인정보	- 사내 시스템 내 직원 등에 대한 개인정보 등 - 행정전자서명, 행정전자공동이용 신청자의 개인정보 등	제6호
경영혁신실 정보관리처	기타	- 기타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제6호
경영혁신실	민원처리	- 진정, 질의 등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민원 내용 또는 처리 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제6호
인재경영처 유역본부	시험관리	- 시험 응시자의 성적, 학력, 주소 등 개인정보	제6호
인재경영처	범죄, 위법, 부정행위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명단 등 -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6호
인재경영처	인사관리	- 인사교류 신청내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 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에 관한 정보	제6호
인재경영처	인적사항	- 직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 자택주소,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 번호, 경력 등 업무수행과 관련없는 개인정보	제6호

소관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인재경영처	근태	- 직원의 연차, 병가 등 공개될 경우 직원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정보	제6호
인재경영처	부동산거래	- 합숙소 임차계약, 임차사택 임대차 계약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당사자의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관련 정보	제6호
인재경영처	합숙소관리	- 직원 합숙소 입실, 퇴실 내역, 합숙소 관리비 지출 내역 등 합숙소 이용 직원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정보	제6호
인재경영처	급여	- 급여명세서, 연말정산 관련 자료, 원천징수내역 등 직원 개인의 급여 연관 정보	제6호
인재경영처	상훈, 포상	- 공적조서, 포상내역 등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6호
인재경영처	복리후생	- 건강검진 결과에 관한 정보, 임차사택 신청내역 등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6호
인재경영처	금융거래	- 직원의 재산등록사항 관련 정보(다만, 법률에 의해 공개토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 금융거래 내용 및 관련 정보 (다만, 법률에 의해 공개토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 공개시 특정대상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6호
재무관리처	국유재산	-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등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정보	제6호
재무관리처	주식관리	- 개인 또는 법인 주식내역 및 매도, 매수내역, 주주총회 내용 중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및 법인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6호
정보관리처	개인정보	- 개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급여, 학력, 직업, 경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수변기획처	분양	- 분양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 - 분양 영업보상 자료 -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 개인정보 자료	제6호
댐 사업장	댐용수	- 댐용수 고객 관련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사용량, 계약량, 요금 등)	제6호
광역상수도 사업장	광역상수도	- 광역상수도 고객 관련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사용량, 계약량, 요금 등)	제6호
지방상수도 사업장	지방상수도	- 지방상수도 수용가 관련 개인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 - 검침원(고객관리사) 계약서 등	제6호
해당 부서	보상	- 광역수도건설, 댐, 단지사업 등 보상사업 관련 토지수용 대상자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	제6호
전 부서	인재개발	- 교육 서명부 등 교육 참석자들에 대한 개인정보(이름, 소속 등)	제6호
전 부서	인적사항	- 직원,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전화번호, 학력, 주민번호, 사회경력 등 업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등	제6호
전 부서	재산조회	- 개인별 토지, 건물, 자동차 등 재산소유현황 조회자료	제6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법인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의 영리목적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비공개 유형

1.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 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2.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한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 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정보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최저임금적용 제외 인가 신청서, 차량의 세부제원, 세부도면 또는 부품의 규격 및 하중 분포별 분담하중의 산출방법 등이 포함된 형식승인 신청서 등
4.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그 밖의 공개될 경우 개인,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 공개 가능한 법인 등 정보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관련 사례(행정심판, 판결례, 외국 사례 등)

1. 감정평가업자 선정서 및 선정절차와 관련된 제반 서류 공개 여부 (수원지법 2005구합 5292) ⇒ 비공개
 - 감정평가업자 선정서 및 선정절차와 관련된 제반서류의 경우, 그 일부에는 감정평가기관을 추천한 위 사업지구 보상대상자의 인적 사항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감정평가업자 선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담고 있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로서는 향후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에 있어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등 이익이 현저히 저해될 것으로 보이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2. 회사의 수입·지출내역, 각종 자금조달과 회계처리 내역 등이 포함된 과세정보 공개 여부(서울고등법원 2002누19086) ⇒ 비공개(1호, 7호)

3. 입찰계약에서 계약자로 선정된 업체의 설비 및 장비현황, 낙찰업체들의 지분율, 기술자의 자격, 기술능력, 시설능력, 사업추진 구성·운영계획 등 관련정보 공개 여부(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24651)
⇒ 비공개

□ 소관부서별 주요 비공개 대상 정보

소관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미래전략실 재무관리처	신규사업	- 신규사업 기획 및 사업분석 관련 정보 - 공개될 경우 K-water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7호
미래전략실	경영방침	- 장·단기 경영계획 및 분석, 사업전략 수립 정보 - 기타 K-water 경영방침에 관련된 정보 - 공개될 경우 K-water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7호
경영혁신실 글로벌협력본부	출자회사 운영 등	- K-water 자회사 및 출자회사(국내, 국외)의 경영 및 영업 비밀에 관련된 정보 - 공개될 경우 K-water 및 자회사, 출자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7호
글로벌사업본부	해외사업	- 해외사업 추진전략 등 전략 수립과정 중에 있는 정보 - 해외 수자원, 수도, 에너지 사업 설계 및 검토 관련 정보 - ODA 사업 수행 검토 자료 등 - 공개될 경우 K-water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7호
인재경영처 노동조합	노사관리	- 공개될 경우 K-water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7호
인재경영처	복리후생	- 공개될 경우 K-water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7호
인재경영처	인감업무	- K-water 인감 및 직인 등 인장에 관한 정보 - 도용할 경우 위·변조, 범죄악용될 위험이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K-water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7호
인재경영처	내부관리	- 시설관리 또는 사무 진행관리를 위한 것으로써 관리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K-water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7호
재무관리처	자금지원	-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 공개시 특정대상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7호

소관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재무관리처	외국환거래	- 외국에 사무소를 둔 법인의 외국환 거래내역	제7호
재무관리처	자산 투자계획	- 업무용 고정자산 등 유·무형 자산 투자계획에 관한 정보 - 공개될 경우 K-water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7호
재무관리처	주식관리	- 개인 또는 법인 주식내역 및 매도, 매수내역, 주주총회 내용 중 공개될 경우 해당 법인 및 K-water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7호
재무관리처	계약	- 입찰 참가 업체의 영업 노하우, 도면, 관련 기술, 시공실적 등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재무관리처	법인카드	- 법인카드 번호, 결제 비밀번호 등 카드 결제에 필요한 정보 - 공개될 경우 K-water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7호
재무관리처	재산종합보험	- K-water 시설물의 재산종합보험 가입 금액 및 내역 등 현황 정보 - 공개될 경우 K-water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7호
물관리기획처 수도개발처	시설물 투자계획	- 수도시설, 수자원시설 등 시설물 중장기 투자계획, 투자재원 조달 등에 관한 정보 - 공개될 경우 K-water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7호
물산업혁신처	중소기업 금융지원	- K-water와 중소기업간 금융지원에 관한 정보, 당해 중소기업의 영업 및 재산에 관한 정보 - 공개될 경우 K-water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7호
물산업혁신처	지식(산업) 재산권	- 지식(산업)재산권 관련 검토 정보, 중소기업 및 사내벤처보유기술 관련 정보 등 - 공개될 경우 해당 법인 및 K-water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7호
물산업혁신처	기타	- 그 밖에 공개될 경우 해당 법인 및 K-water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7호
전 부서	사내용 메뉴얼	- K-water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사내용으로 제작된 매뉴얼 또는 가이드북 중 영업상 비밀에 관련된 정보 - 공개될 경우 K-water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7호
전 부서	법인관리	- 법인 영업규모 및 시설내역, 사업활동에 있어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 공개될 경우 K-water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7호

8

부동산투자·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부동산투기·매점매석은 건전한 시장기능을 교란시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유형의 예시에 해당함

● 제8호는 대상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는 별도의 이익형량 없이 비공개를 하도록 함

□ 비공개 유형

1. 용지매수 계약서, 설계 단가표
2. 각종 부동산(주택, 도시개발, 지역개발) 개발계획 및 도면 등
3.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 소관부서별 주요 비공개 대상 정보

소관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재무관리처	국유재산	- 국유재산(수도용지, 댐용지) 사용허가 내역(국유재산의 구분, 주소, 면적, 허가일자, 상대방, 기간, 사용료 등) 등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제8호
해당 부서	수변(단지) 사업	- 수변사업 투자계획 및 단지(EDC사업, 시화MTV, 송산그린 시티 등)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 -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제8호

소관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해당 부서	분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자 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관련 정보 - 분양 대상자 선정 관련 공식적인 안내 전 검토자료 등 -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제8호
해당 부서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지매수 계약서 등 보상 관련 정보 - 사업 고시 전 보상예정 필지에 관한 정보 - 보상대상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 -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제8호
전 부서	신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사업(수도, 수자원, 해수담수화, 수상태양광 등) 추진계획 등 사업 고시 전 검토자료 등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제8호
전 부서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의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8호